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21550 취득세부과처분및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9. 2.
판 결 선 고	2016. 10. 28.

주 문

1.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46,127,52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지능형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이라 한다) 제41조에 의하여 2010. 6. 24.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지방세 감면신청

1) 원고는 2013. 3. 31. [redacted]구 [redacted]구 [redacted]동[redacted]가 [redacted] 토지 6,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같은 해 4. 3. 피고에게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5. 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득세 감면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23. 위 토지 지상에 건물 14,136.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다음, 2015. 2. 16.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3. 27. 법률 제13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취득세 신고.납부

원고는 2015.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로봇산업 관련기업들을 입주시키면서 임대료가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4.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부분(21.01%)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246,127,520원(토지 부분 100,257,640원, 건물 부분 145,869,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고시

한편, [redacted]광역시장은 2013. 12.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위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마.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5. 4. 15 피고에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종전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246,127,520원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생사업지구 지정은 산업단지지정으로 의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지 아니한 재생사업지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에 의제한 취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는 2016. 3.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 13 내지 16, 2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학기술진흥단체인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2013. 5. 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5. 3. 27. 법률 제13248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로 개정되기 전의 것 모두를 통칭한다) 제45조 제1항(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39조의11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생사업지구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청사건립사업계획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로봇산업관련기업들에게 임대로 제공될 예정임을 잘 알면서 2013. 4. 3. 원고가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같은 날 감면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이유로 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고의 정관 제2조, 제4조는 아래와 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이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의 목적사업이 등기되어 있다.

제2조(목적) 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능형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지능형 로봇산업 동향조사 및 출판, 전시, 홍보사업 3. 지능형 로봇산업의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4.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사업 5.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 홍보에 관한 사업 6. 지능형 로봇 시장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및 보급, 확산에 관한 사업 7. 지능형 로봇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8. 지능형 로봇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9. 지능형 로봇 제조에 대한 지원사업 10. 지능형로봇 제품 표준의 연구개발, 보급 및 국제표준화활동 11. 신뢰성인증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12.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13.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 성장 등의 지원사업 1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1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기 직전인 2014. 10.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신청자격을 '창업자, 로봇기업 · 연관기업'으로, 임대용도를 '창업보육실, 사무실 및 연구소, 생산형 공장 등으로, 지원내용을 '진흥원 지원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진흥원 소유 장비 유 · 무상 이용, 회의실,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편의 제공, 입주기업 네트워크 모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6. 입주기업관리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위 지침 5조는 입주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창업자: 로봇·로봇연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2. 로봇기업·연관 기업(로봇관련 제품 및 부품 생산업체)
가. 클러스터 장비와 연계하여 R&D 및 사업화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나. 생산형 장비를 보유한 기업
다. 타지역에서 대구지역으로 본사 이전 또는 사무소 및 기업부설연구소 개소 기업
라. R&D 또는 교육 기능 수행을 위한 사무소,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사무소 개소 기업
3. 로봇산업 관련 출연기관 및 연구소, 대학, 사업자단체, 협회 등 비영리기관
4. 입주기업 및 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기업, 기관, 협회
5. 기타 진흥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원고는 2015. 3.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2015. 4. 6.경 이 사건 건물의 총면적 141,36.97㎡ 중 21.01%에 해당하는 2,970.18㎡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대부분은 로봇산업 관련 기업이고, 회계법인, 특허법률사무소 등 입주기업과 기관에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업체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17, 18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과학기술진흥단체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로봇·로봇연관 아이템을 가진 창업자, 로봇기업·연관기업 및 로봇산업 관련 연구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대학 등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제3자 임대가 위 쟁점조항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① 쟁점조항이 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취지는 국가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진흥단체의 설치 · 운영에 혜택을 주고 고유업무인 과학기술진흥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 조항이 규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판결,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항 제8호로, "직접 사용"의 의미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제3자 임대의 경우가 더 이상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보더라도, 각각의 단체나 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이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다수의 조문이 존재하는 점(위 법 제21조, 제23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등 참조), 따라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반대해석상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 오히려 임대용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문의 체계나 문리상 자연스러운 점, 더욱이 위 추가된 '직접 사용'의 정의규정의 문언상으로도, 그 해석상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는 방법으로 고유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배제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정의규정이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는 방법으로 고유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를 당연히 제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입주기업들이 원고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상 목적사업에 규정되어 있는 '지능형 로봇 제조에 대한 지원사업,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 성장 등의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기업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업체임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제3자에게 임대되었음에도 여전히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쟁점 조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판사 황형주

판사 이아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5. 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3. 27. 법률 제13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